

Your Reliable Partner!



(재)FITI시험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확인신고 개선명령 알림

- 각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0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확인신고 개선명령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개선명령 처분내역(1건) 1부. 끝.

FITI시험연구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KATRI시험연구원장, KOTITI시험연구원장

전결 03/15

선임 김세롬 팀장 장갑식 본부장 구현진

협조자

시행 안전인증팀-606 (2024.3.15.)

접수

우 0779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79

/ <https://www.fiti.re.kr>

전화 02-3299-8208

전송 02-3299-8129

/ ksrom@fiti.re.kr

/ 공개